

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발의경과

본 규칙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4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제9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을 증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전문위원 증원(안 제5조)

현재: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

개정: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

4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제9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증원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.
- 다만, 최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면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가 당초보다 증원(18명→21명)될 계획이므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할 있다고 사료됨